제286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
제1차 회의 2022. 4. 25.(월)

‘코로나바이러스-19’ 관련 재산세 감면 지원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자치행정위원회

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’ 관련 재산세 감면 지원 동의안 검토보고

1. 제안경과

본 동의안 2022년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
4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거 천재지변·재해 등 지방세 감면 필요성 인정 시,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

3. 주요내용

- 착한 임대인 지원

1) 감면대상: 임차인에게 상가·건물의 임대료를 기간 내 인하한 임대인
가) 임대인)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
나) 임차인) 소기업(소상공인 포함) 또는 비영리단체

2) 대상기간: 2022. 1. 1. ~ 2022. 10. 31.

3) 감면세목: 건축물분 재산세

4) 감면내용: 임대료 인하액의 100%까지 인정

5) 감면제외: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인 경우
※ 특수관계: 직계존비속,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존비속

6) 감면방법: 직권 또는 신청(기간 내 미신청시 감면 제외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1

나. 예산조치 : 붙임2 (비용참조)

다. 관련부서 : 세 정 과

5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 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’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·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임대인에 대하여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득하여 재산세 건축물분을 감면해 주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
감면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해 준 부동산임대사업자 임대인의 건축물에 대하여 11월 한 달 동안 감면 신청 접수를 받아 임대료 인하액의 100%까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 지원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, 사회적 고통 분담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을 지원해주기 위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.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로 인한 그동안의 재산세 감면액은 2020년도 6,691건에 502백만원(토지+건축물)이고, 2021년도 1,532건에 254백만원(건축물 / 고급오락장 제외)을 감면해 주었으며, 2022년도는 건축물분에 대하여 약 275백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※ 2022년도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외

- 2021년 1년간(’21.1.1. ~ ’21.12.31.) 영업금지 된 사업장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적용 불가

  (예 ’21.6.2. ~ ’22.6.1.)

< 참고 자료 >

▢ 2021년도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현황 : 1,532건 / 254백만원

❍ 2022년 예상 감면액: 275백만원

※ 건수는 전년과 동일하고, 재산세액 10% 상승할 것으로 가정함

2021년 지역별 감면 건수 및 감면액

읍면동	건수	세액	읍면동	건수	세액
와부,조안	89	14	별내,퇴계원	259	40
진접읍	174	26	호평,평내	206	42
화도,수동	262	46	금곡,양정	17	3
오남,진건	129	28	다산	396	55

▢ 향후계획

- 안내문 발송: 2022. 7월

  ※ 발송대상: 재산세(건축물)분 납세의무자 전체(약 3만명)

- 감면신청접수: 2022. 11월

- 재산세(건축물분) 환급: 2022년 12월

붙임 2 **관계법령 발췌서**

□ 지방세특례제한법

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

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. 〈개정 2010. 12. 27., 2015. 12. 29.〉

□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제2조(지방세 감면규모 등)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“란 지진, 풍수해, 벼락, 전화(戰禍), 도괴(倒壞)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. 〈개정 2015. 12. 31, 2020. 1. 15〉